



Q&A로 알아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편집자주]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입주의 처리 조작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관청 업무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권역 직무에 선정·탈락하도록 개입



- 수상 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 사항 확인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등의 배정·지연 무지 등에 개입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법원을 위한 번역 권역 임무 처리
- 행정처분·행법부과의 감경·면제

예외사항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 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입니다.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이런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사항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움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청렴 대한민국’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신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 원상회복 조치
- 신분 비밀보호
- 신변보호
- 책임감면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형벌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형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3·5·10 예외규정은 무슨 의미인가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가액범위 3만원**
- **선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가액범위 5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가액범위 10만원**

사례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

질문 '공직자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 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

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언론사의 경우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공직자 등'에 해당



- ▶ 학교법인,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직원으로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
 - ※ 다만, 전문업체(예를 들어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학교(법인), 언론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
- ▶ 한편,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고문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면 “공직자 등”에 해당될 수 있음

참고 판례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78, 13025 판결)

사례 의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답변 甲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나, 乙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함(제2조제2호다목)
- ▶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

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 소속 의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제2조제1나목)

사례 국회의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나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국회의원은 ‘공직자 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제2조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



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제5조제2항제3호)

-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례

‘금품 등’의 수수 주체 : ‘공직자등’및‘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질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에게든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의 경우,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대가성 여부는 불문)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는 ‘공직자 등’ 및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이므로(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참조) 식사 접대를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식사접대를 하는 사람과 식사접대를 받는 공직자 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사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질문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도 각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인가요?

답변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제2조제2호나목)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중소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함



사례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

질문 언론사 비등기이사, 프리랜서 기자,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1. 비등기이사 : 언론사 비등기이사는 언론사 임원(이사, 감사)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기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임원 :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직원에 포함
 - ※ 인턴기자과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원에 포함.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지 여부

질문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신고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 하나요?

답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함
 -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사례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하는 증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지 여부

질문 증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은 발행 안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신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권사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해당하나요?

답변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발행하는 '리서치자료'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간행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증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



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고, 이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12호)

- ▶ ‘정보간행물’이란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이러한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 (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

질문 甲은 사기업 대표이사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함을 전제) 거래처 대표이사 A와 골프를 치면서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업 대표이사로서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을 뿐,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제8조제2항),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대표이사로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님
- ▶ 다만,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제8조제1항)

- 비록 甲이 사기업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 등으로서의 지위(학교법인 이사장)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 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 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이중지위자라 하더라도 공직자 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높은 청렴성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사례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사외이사)**

- 질문** 1. A회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학교수 甲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A회사가 지급하는 월급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인가요?
2. A회사가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甲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인가요?
3. 청탁금지법상 甲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1. 월급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甲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 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주는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제8조제3항제2호),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품 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제8조제2항),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

▶ 다만,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제8조제1항)

- 비록 甲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국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사례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의사)

질문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인 甲이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 A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환자 치료 관련 甲의 금품 수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

는 어렵고,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공직자 등(대학교수)으로서의 지위와 공직자 등이 아닌 의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짐

참고 판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6.15. 선고 2005도1420 판결)

▶ 다만,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제8조제1항)

- 甲이 공직자 등이 아닌 의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사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 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 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사례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

질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



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甲이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A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甲이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직자 등)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〇〇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甲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제11조제1항제1호), 甲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공직자 등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짐
- ▶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제8조제1항)한
 - 비록 甲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받은 금품 등이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사안의 경우 甲이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는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사건 승소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1)

- 질문** 1.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3.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1. ①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②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공무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법령에 따라 공무상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제11조제1항제1호내지 제4호)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제11조제1항제2호·제4호)
3.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금지 및 수수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제11조제1항)

사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2)

질문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법령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 고시, 내규 등도 포함되나요?

답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포함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제11조제1항제1호)
- ※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헌재 2009.7.30. 2007헌바75 결정)
-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령’에 조례·규칙이 포함됨을 명시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사례 **속지주의, 속인주의 관련**

- 질문** 1. ① A외국기업 대표 B가 A기업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甲(한국국적)에게 한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② A외국기업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외국 주재 특파원(한국국적) 乙에게 B가 외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

2. ○○국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甲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국제기구, 외국대학 등에서 외부 강의 등을 하고 1시간에 50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답변** 1. 한국 공무원 甲은 한국에서 접대를 받았고, 특파원 乙은 외국에서 식사 접대를 받았으나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甲과 乙은 공직자 등으로서 각각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제21조). 또한 외국인 B가 외국에서 乙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나, 한국에서 甲에게 식사 접대를 한 것은 속지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2.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 3만원 범위 안에서 식사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또한 외교관에 대해서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2).

사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1)**

질문 지역주민 A가 지인인 ○○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



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한 경우 甲은, 乙, A에게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甲은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2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乙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의미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②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③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신고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2)



A회사 직원 B가 지역유지인 사업가 C를 통해 ○
○시청 문화체육관광국국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구청 사업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위 부탁을 전달한 경우 甲은, 乙,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직원 B는 제3자(A회사)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임과 동시에 '제3자(C)를 통한' 부정청탁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2항이 적용됨

*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직원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사업가 C는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甲은 담당공무원 乙의 업무처리 관련 결재권 또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A회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乙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乙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